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5호
- 나.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찬성자 11명)
- 다. 발의일자 : 2022년 08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09월 02일

2. 제안이유

-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을 조례에 명시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7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태권도 진흥 사업에 추가하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나. 법적 근거 규정

- 태권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5호¹⁾의 체육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²⁾,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의 진흥 또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가 존재함.

다.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사업 현황

- 동 조례안(2021.9.30. 제정·시행)을 근거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태권도 관련 사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관광산업과의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본예산 1억 2백만원)은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태권도를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운영 중임.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특히 올해 청와대 전면개방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태권도 공연을 제공하고자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2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또한 “2023년 태권도 상설공연 기본계획” (2022.6.)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및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화하고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음.

라. 태권도 발전과 진흥사업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사업에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4조4)는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도 태권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집행기관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계획(2024~2029)을 2023년에 수립할 예정이고 태권도 종목의 대한 계획 수립이 포함될지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태권도 진흥지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태권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동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5)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안번호
10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이효원 의원	2022. 8.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진경과	<제안이유> ○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을 조례에 명시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 <주요요지> ○ 시장의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책무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7호)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태권도법 제6조에서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정책을 정부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과 연계·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태권도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 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홍성수 (☎2133-2677)
			담당 김병모 (☎2133-2678)